



기여입학제의 부당성



신재철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1990년대 이후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거론되어 온 기부금 입학제가 2000년 10월 연세대 김우식 총장이 2004년부터 '기여우대입학제' (이하 기여 입학제라 칭함)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학계와 언론에서 찬반 양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2월 중순에는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경제부총리와 아직 시기상조라는 교육부총리 사이에 논쟁도 있었다(중앙일보, 2001. 3. 17. 30면). 이는 정부 내에서도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있는 증거이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대체로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찬성론자들은 사립대학들이 현재 등록금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국고지원도 극히 적기 때문에 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거액의 돈이 드는 시설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학의 시설·설비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두 시설이나 교육의 질 등 모든 면에서 국제 수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수준의 우리나라 대학은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치열한 국제 경쟁을 이기고 발전하기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처지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학교육이 크게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당장 국고 지원이나 다른 방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는 하나의 불가피한 해결 방안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입학제는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기여입학제는 단기적으로 대학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 또는 고육책"이라고 하듯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학재원 확보 방안은 결코 아닐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여입학제는 공정한 입학시험 경쟁의 원리에 예외를 인정하는 파격적인 제도이므로 극심한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 되기 때문이다.

Ⅱ. 기여입학제의 의미와 문제점

1. 기여입학제의 의미

기여입학제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설립자의 후손이나 교직원 자녀, 기부금을 내는 학부모의 자녀를 정원 외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부금액의 총액과 지출 내역, 용도를 공개하는 등 규제와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는 제도이다(김윤태, 1992, p. 20; 윤정일, 1987). 기여입학자의 범위에는 당해 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가 큰 자의 직계 후손뿐만 아니라 그 외 당해 대학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후손, 즉 당해 대학에 일정 기간(예컨대 10년 이상) 교직원으로 근무한 자, 교무위원 이상의 보직을 맡고 대학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자, 대학에 건물을 지어 주거나 도서 및 기타 대학의 연구와 학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기자재나 시설·설비, 자료 등을 기증한 자 등의 후손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기여입학제는 맨 처음 '기부금입학제'라는 이름으로 주장되었다가,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기여입학제'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이 역시 기부금입학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좀더 부드럽게 '기여우대입학제'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기부금입학제이든 기여입학제이든 또는 기여우대입학제이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있는 한

그것은 돈으로 대학입학 허가증을 팔고 사는 것이므로 기부금입학제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연세대학이 기여우대입학제가 기부금입학제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도 기여우대입학제를 도입해야 대학의 재정난이 해소되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월간중앙, 2002. 4)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2. 기여입학제의 문제점

기여입학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법률적, 운영적 문제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 등 크게 네 가지의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인 것으로서 기여입학제는 그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대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여입학제의 반대론자들은 기여입학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황금만능주의를 더욱 조장한다고 주장한다(김신복, 1992; 문경삼, 1992). 그들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는 '기부금입학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입학제는 입학 성적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돈을 내고 입학 자격을 사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돈을 주고 입학 자격을 사는 것이다. 반면에 원래의 기여입학제는 자녀들의 입학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평소에 재정적으로 또는 다른 행위로써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사람의 뜻을 기려 기여를 받은 대학 당국이 기여자의 '후손'을 성적과는 무관하게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는 기여한 당사자의 '후손' 보다는 '직계 자녀'에 혜택을 적용하기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여입학제는 기여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미리
대학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

때문에 기여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미리 대학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여입학제는 기부금입학제의 이름만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여입학제가 허용된다면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더욱 팽배되어 더 큰 부정과 비리를 낳게 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땀흘려 한 글자라도 더 배우고 가르치려는 교육의 근본 가치가 송두리째 파괴될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력이 아닌 돈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된다.

또한 2003년부터 대학의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 중 재수생들이 많았다는 신문 기사 때문인지 대학 입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입시학원에 몰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른바 일류대학 선호 경향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신규 인력의 능력과 자질 및 생산성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학 졸업 여부와 출신 대학의 수준(명성)을 선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여입학제가 채택된다면 돈이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소위 일류대학에 미리 보험을 들여(투자하여) 자녀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사회계층 재생산(사회 불평등 재생산)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까지도 국민의 불평등한 신분을 고착 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리하여 돈이 없는 가난한 부모와 그 자녀들은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동기를 상실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들은 가진 자와 사회 및 정부에 대하여 항상 반감을 가지게 되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둘째, 기여입학제는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기여입학제는 헌법정신과 교육 관련법 등 관계된 법령에 합치되어야 함에도 위헌성과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제 3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능력이나 실력, 즉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그리고 헌법 제 11조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특수 계급을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고,

특권 계급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대학 입학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사회계층의 세습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외교관 자녀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주어 특례 조치로 입학시킨 대학에 대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합격 취소 판결을 내린 판례(한국교육신문, 1991. 9. 11: 3)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여입학제와 외교관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은 그격도 다르다. 즉, 외교관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은 부모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빚어진 불가항력의 결과이지만, 기여입학제는 입학 성적 미달, 즉 학생의 능력이 부족한 결과이므로 두 가지를 동격으로 취급할 수 없다. 또한 기여입학제가 기부금 위주로 학생을 입학시킨다면 그 부모는 세금을 내지도 않고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자녀를 일류 대학에 입학시키고 나아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출세를 보장받게 되므로 결국 몇 꼽으로 혜택을 입게 된다. 이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35조 1항은 대학입학전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 3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기여입학에 관한 사항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기여입학제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헌법정신에 합치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도 위반하는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기여의 범주와 기준, 기여입학 특혜자의 자격 기준과 선발 방법, 특혜의 정도, 기여금의 관리원칙과 활용 방안 등을 포함시켜 그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여입학제의 운영이 객관적이고도 보편타당한 구체적인 지침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앞에서 정의한 기여입학제의 개념에서 핵심은 기여입학자의 범위와 자격 및 학생 수, 입학 기준과 그 결과의 공개 여부, 기여입학생의 학사관리 등인데, 이것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김완섭, 1993).

먼저, 기여입학제의 찬성론자들은 기여의 범위를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토지, 건물, 현금 등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비물질적으로 기여하여 대학 설립이나 발전에 현저하게 공로가 있는 자의 자손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김윤태, 1992). 그런데 물질적 기여는 돈의 액수로 계산하여 특혜입학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즉 특혜입학을 위한 기부금 액수를 정한 경우, 그 액수를 초과하여 기부한 사람이 너무 많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결국 입학이라는 상품을 얻기 위하여 공개입찰 현상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상품화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물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비물질적 기여의 범위를 학술적 또는 정신적으로 대학의 명성을 떨친 교수나 동문 또는 대학의 유지·발전에 크게 공헌한 총장과 교직원을 포함시킨다고 할 때, ‘명성’ 또는 ‘공헌’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며, 설혹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해서 구성원(교수, 동

문, 교직원, 역대 총장 등)들이 그 기준에 승복할 것인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기여입학자의 수학능력을 어떻게 판별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대학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해서 수학능력이 없는 자를 무조건 입학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학능력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기여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학생들을 학업성적이 낮더라도 졸업시킬 것인가? 아마도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낮은 학점을 부여하여 탈락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이들 학생들이 낮은 학점 때문에 중도에 탈락한다면 자녀의 기여입학을 위하여 그 대학에 거액의 기부금을 넬 부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기여입학제가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넷째, 기여입학제의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써, 정부나 사회 각계 요직에 있는 자는 권력으로써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들 자녀들의 입학 허가를 요청할 때 사립대학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 내 학생들 간에 기여입학자와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한 자 사이에 위화감이 팽배할 것이며, 기여입학자가 겪게 될 열등의식과 소외감은 본인의 인격 발달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기여입학제의 찬성론자들은 정원 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는 것처럼 설득하려 하나 이는 스스로 모순을 강변하는 논리이다. 만약 정원의 1~2%를 사립대학이 수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정원을 1~2% 늘려서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에게 입학의 기회를 더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 대학의 경우 대학 발

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에 대하여 입학사정에서 가산점으로 인정하는 정도이지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를 추진하려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원외 1~2%를 입학시키자는 것 즉 수학 능력의 기준인 점수를 돈으로 교환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면 대학의 일부 교수나 직원 혹은 동창회원 등이 기여입학 지원자를 소개하는 중개인이 될 것이고, 그 경로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구축·운영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수수료가 거래될 것이며, 대학 당국도 거액의 기여입학자를 끌어오는 자를 더욱 중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수나 교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겠는가? 특히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 사립대학의 교직원은 본래의 직무보다는 기여입학의 중개인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은 교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본래 직무인 교육과 연구보다는 자기 학교에 기여입학할 자를 찾아다니면서 섭외하는 일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세청 일류대학의 경우는 기부금의 액수가 클 것(서울의 어느 사립대학의 경우 벌써 20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야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이며, 이른바 삼류대학 또는 지방 대학의 경우는 기여입학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싸구려 대학으로 값이 매겨지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지방 사립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교수들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그런 대학에게 기여입학제는 '그림의 띡'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기대했던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몇몇 일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세청 삼류 사립대학은 여전히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어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⁹은 더욱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더욱 벌여 놓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세입도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기여입학제의 원래 목적이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의 몇몇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그 것의 원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교수와 교직원은 기여금 증개인으로 전락시키고, 대학은 대학입학 장사치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이 교육 기회의 평등과 도덕성이 존재하는 대학 입학시험제도 하에서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하여 신경과민증에 가까울 정도로 염려하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듯이 어느 고위직 공무원을 남편으로 둔 어떤 부인이 자식의 과외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괴출부로 일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세대가 기여입학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그 해(2001년)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부금이 전년(220억 원)에 비해 거의 두 배(408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비해 서울대 등 다른 대학들은 오히려 기부금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특히 연세대가 기여입학제 도입 의사를 밝힐 때마다 기부금 액수와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중앙일보, 2002. 1. 3; 한국경제신문, 2002. 1. 3).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자녀들을 입학시험 지옥으로부터 구해 낼 수 있다고 할 때에 대부분의 학부모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기부금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없는 학부모는 부모로서 열등감 또는 좌절감을 가지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자녀 역시 그러한 자기 부모를 무능하다고 업신여기게 될 것이므로 기여입학제는 반교육

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다(이재윤, 1992, pp. 5~6).

III. 사립대학의 재원 확보 방향

기여입학제가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진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배 계층은 대학교육을 신분상속 또는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인은 대학교육을 자신이나 자녀들의 신분상승 수단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차별이 극심하여 대학졸업장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특히 소위 일류 또는 명문 대학의 졸업장은 그것을 취득한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학습 능력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일류대학에 들어가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에 대한 과잉 수요가 발생하고,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대학에 특히 명문 대학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게 된다. 대학교육에 대한 과잉 수요는 대학 입학시험 제도를 아무리 훌륭하게 고친다고 해도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서울의 몇몇 사립대학은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대학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은 결코 아니다. 대학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의 성격을 가진 기여입학제보다는 장기적인 대학재원 확보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대학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교육비 원가분석을 통한 학생납입금의 현실화, 법인출연금의 확충,

대학시설 활용의 효율성 제고, 학교의 시설·설비 대여 등에 의한 수익사업의 활성화로 상업적 수입 확보, 대학행정의 운영개혁을 통한 예산절감과 예산 운영의 합리화, 대학재정의 공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동창회나 기업 또는 독지가 등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유인체제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학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매년 완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게 하여 의혹을 두지 않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기금을 불우한 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박홍수, 1992. p. 1).

둘째,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사립대학 학생 수가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육은 국가의 국제경쟁력과 과학기술의 발전, 즉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 예산을 크게 늘려 교육 다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윤정일(1987)은 교육재원의 확충 방안으로서 '인력활용세' (人力活用稅)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즉, 일정 수 이상의 고등교육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에게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되, 교육활동에 불참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인력활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인력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까지 대학에서 양성한 인력을 아무런 노력이 없이 가져다 사용만 하고 대학에 대하여 이런 저런 요구나 불만만 토로하였지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일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력활용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던가 또는 기업을 대학교육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사립대학 재단들의 지속적인 전입금의 확대 유도체제와 기부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신복(1992). "기여입학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등교육연구』*, 제 4권 1호, pp. 9~18.
- 김완섭(1993). "대학입시정책에 있어서 기여입학제의 타당성 평가". 미출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윤태(1992). "기여입학제 반대론에 대한 논평". *『고등교육연구』*, 제 4권 1호, pp. 19~21.
- 문경삼(1992). "기여입학제 시행방안에 대한 토론". *『고등교육연구』*, 제 4권 1호, pp. 29~34.
- 박홍수(1992).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론". *『고등교육연구』*, 제 4권 1호, pp. 1~4.
- 윤정일(1987). "교육재원의 확충 방안". 서울: 교육개혁심의회.
- 이재윤(1992). "기여입학제 찬반론에 대한 논평". *『고등교육연구』*, 제 4권 1호, pp. 5~8.

신재철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광주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교육제도론」(공저), 「교육실증의 이론과 실제」가 있으며, 「교원교육과 교육학 교육」, 「한국 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통일 후 교원양성 및 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